

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의 견 서

(의안번호 제2127호)

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입니다.

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,

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, 여러분!

오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사안으로

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27호,

「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○ 서울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

공익증진을 목적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

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·운영함에 있어,

○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이 안건 심의 시
소속단체 및 추천단체 등에 대한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를
조례에 명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이뤄지도록
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□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선정 심의에 있어
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
공감하는 바입니다.

또한,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
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
기대합니다.

□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.
감사합니다.

2021. 2.

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관영